

##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·공고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『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』 지정을 위하여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8일

### 사 천 시 장

#### 1.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

사업명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용도지역	비고
도시개발사업 (우주항공복합도시)	사천시 용현면 일원	5,641,127.4	자연녹지, 계획관리 농림지역, 기타	

#### 2. 제한사유

- 『도시개발사업(우주항공복합도시)』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

#### 3. 제한대상행위 :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

-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·증축 (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)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
- 토지의 분할,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

#### 4. 제한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(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),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,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시 까지로 함.

#### 5. 공람기간

-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

#### 6. 공람 및 의견제출처 : 사천시청 도시과

#### 7. 관계도서 : 실음생략(도시과 비치)

#### 8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장소에서 서면 제출

#### 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(☎ 055-831-3165) 및 우주항공과 (☎ 055-831-349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